

Vol. 18 / December 2025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기준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 '88년 도입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
 - 발주자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합산 금액 등)에 곱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단위: 원)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도급인(이하, 원수급자)은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이하, 하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
 - 원수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은 임의 조항이며,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의 위험도”라는 불명확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원수급자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수준이 결정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도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수급사업자(하수급자)가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

하도급 공사 지급 필요성

- 하수급자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산재예방기준 준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를 이행해야 하며,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역할·책임이 강화되는 경향
- 하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지급하였거나, 지급금액이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비용, 산재손실비용, 책임 등을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횡행
 - 원수급자가 입찰설명서 또는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사고 손실비용 및 법적 책임을 하도급자 부담으로 명시(원수급자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재해 발생 시에도 하수급자가 근로자 피해 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 법규 및 기타 법률에 의거 “갑”에게 부과되는 제반 경비 또는 낙하물방지망, 가설비계 안전난간 등 원수급자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물 소요비용을 하수급자에게 전가
- 서울특별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책임과 원수급자가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을 하수급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이 많은 상태(최근 2년간 현장점검 94개 현장 중 32개 현장에서 발생)

<표 2> 건설현장 안전 관련 하도급 부당특약 현황 : 서울특별시,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조치계획, '20~'21년

구분	'20년 上	'20년 下	'21년 上	'21년 下	전체
하수급자 안전책임	13개 현장	3개 현장	5개 현장	11개 현장	32개 현장(34%)
원수급자 안전책임	13개 현장	18개 현장	18개 현장	13개 현장	62개 현장(66%)
소계	26개 현장	21개 현장	23개 현장	24개 현장	94개 현장(100%)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급실태

통계 자료

- 최근 5년('20년~'24년)간 수행된 1,944건의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전체 원가의 1.4%,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 수준(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공사 원가통계)

<표 3> '20~'24년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평균
전체 원가의 %	1.5%	1.5%	1.4%	1.4%	1.3%	1.4%
직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 %	2.0%	2.0%	2.1%	2.0%	2.1%	2.0%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공사 원가통계, 각 년도

- 전문건설업종 특성상 ①고소작업, 외부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 ②인력 투입이 많은 업종, ③도심지 등 안전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되는 업종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중이 타 업종보다 높은 상황

- ①위험도가 높은 업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②인력 투입이 많은 업종(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도심지 등 안전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되는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 건축·산업설비·조경·토목 분야에 따라 동일 업종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중 차이가 존재(예: 철콘)

- 동일 업종의 하도급 공사라도 분야별 공사내용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하여 소요비용 규모·항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

<표 4> '20~'24년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5년 평균)

전문건설 대업종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목	소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5%	3.0%	-	2.8%	3.2%
금속·창호·지붕건조공사업	1.5%	1.8%	-	1.5%	1.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4%	1.6%	3.0%	3.0%	1.6%
상·하수도공사업	0.9%	1.6%	-	2.7%	2.5%
수중·준설공사업	-	2.3%	-	2.9%	2.8%
승강기·삭도공사업	1.4%	-	-	-	1.4%
실내건축공사업	1.4%	-	-	-	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0%	-	1.7%	2.1%	1.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1%	0.7%	-	2.8%	2.7%
철강구조물공사업	1.1%	-	-	1.8%	1.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	2.9%	-	2.8%	2.3%
철도궤도공사업	-	-	-	1.0%	1.0%
합계	1.6%	2.5%	1.7%	2.7%	2.0%

설문조사 결과

- 종합·전문건설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25년 7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 실시(총 143부 회수: 종합건설사 43부, 전문건설사 1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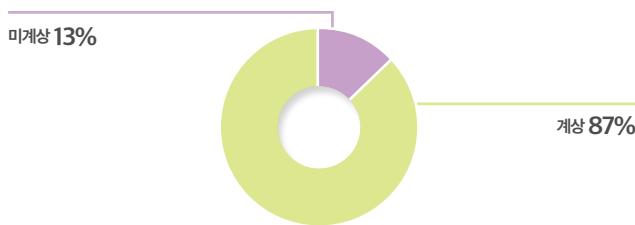
①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및 방식

- 원수급자가 자사 내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계상 또는 사실상 실사용분만 계상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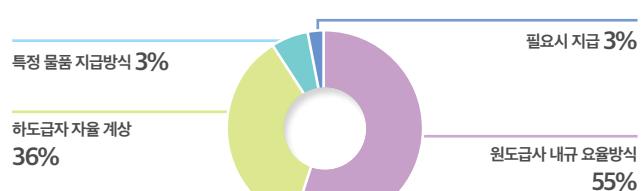
- 원수급자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87%), 미계상(13%)으로 다수 원수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계상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

- 내규에서 정한 요율 방식(54%), 하수급자 자율 계상(36%), 특정 사용물품 지급(6%), 개인보호구 비용만 계상하고 필요 시 추가 지급(3%)로서 일부 원수급자는 계상기준 없이 실사용분만 하수급자 요청에 의해 지급하는 상황

<그림 1> 원수급자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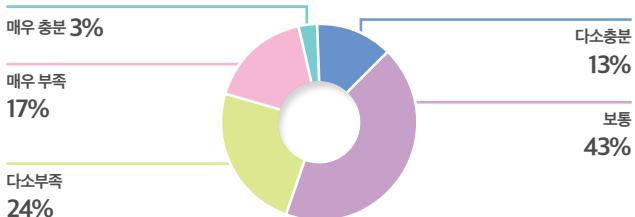
<그림 2> 원수급자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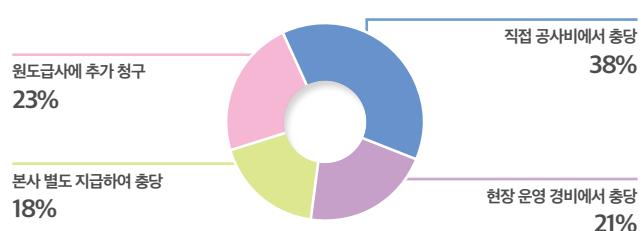
②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및 부족 시 충당방법

- 원수급자가 계상한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하수급자가 자체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에 관한 의견으로 부족(41%: 매우 부족 17%, 다소 부족 24%)이 충분(16%: 매우 충분 3%, 다소 충분 13%)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 충당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직접공사비에서 충당(38%), 원수급자에게 추가 청구(23%), 현장 운영 경비에서 충당(21%), 본사에 요청하여 충당(18%)으로 조사
 - 원수급자에게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분을 추가 청구한 경우의 지급 수준에 관한 의견으로 전액 지급(67%), 일부 지급(33%)으로 조사

<그림 3>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충분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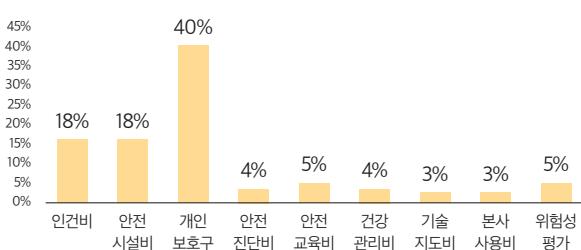
<그림 4>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시 충당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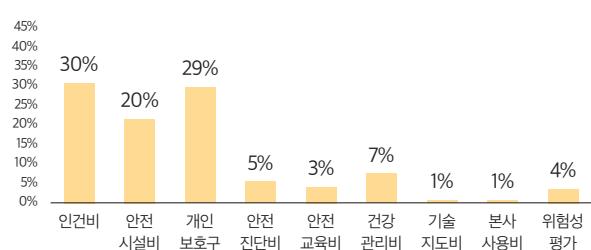
③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중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관하여 개인보호구, 인건비, 안전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주요 사용항목의 차이가 발생함을 파악
 - 개인보호구, 인건비, 안전시설비의 사용비중은 50억 원 미만에서는 76%, 50억 원 이상에서는 79%를 차지
 - 다만, 하도급 5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개인보호구(40%)의 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인건비(30%)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5> 50억 원 미만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비중



<그림 6> 50억 원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비중



상위 10개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기준

계상·정산 기준

① A건설 사례

- (계상기준) 3개 시설물(토목·건축·주택·플랜트) 및 세부 공종에 따라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직접공사비의 0.8~2.37%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및 공기 연장 시 50% 추가 적용
 - 아울러 高위험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할증(50층 이상 초고층·리모델링 공사는 법정 안전관리비의 10% 할증 → 2.90%, 터널공사는 법정 안전관리비의 5% 할증 → 2.87%)

<표 5> A건설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요율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0.8~2.37%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철골공사, 타워크레인/리프트카임대 용역, 준공청소용역	구조물공사, 지하굴착공사, 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리프트카임대 용역	보온공사, 탱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치, 강구조물, 타워크레인/리프트카임대 용역,
0.5~1.5%	토공사, 미장·도장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강구조물공사, 지붕판금공사	일반토공, 상하수도공사, 수중공사, 철물·건축설비	철물, 도장, 미장조적공사, 소방·전기공사
0.3~1.0%	기타	기타	기타

② B건설 사례

- (정산기준) 하도급 공사 착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을 원칙화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선지급(50%), 초과 집행 시 검토 이후 추가 정산(지원) 가능도 명시

<표 6> B건설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

- 수급사업자는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으로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따라 하도급 계약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대 50%를 선지급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시점까지 원사업자는 나머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개인보호구 및 시설물 관련 :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보호구 입출고 내역, 거래명세표 및 반입 사진
 - 안전 관련 인건비 : 안전일지,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장비사용확인서, 사진대조, 임금대장, 무통장 거래내역 등
- 수급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용품 반입 시 안전 인증 등 적격 여부를 원사업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안전 관련 시설비 등 투자가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 안전관리자와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시설비에 대해 실비정산함. 수급사업자가 안전시설물을 포함하여 견적할 때에는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확인함.
-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계상금액보다 초과(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추가 안전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 공문을 요청하고 승인 및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추가 정산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할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작업변경, 시설설치 등이 근로자 안전보건에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목적상 시공이나 작업 용이성이 포함된 경우	①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 위한 가설울타리 ②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 등 (비계, 발판 등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시설 및 사다리 전도방지, 낙하물 방호 선반 등은 가능) ③ 절토부 및 성토부 등 토사유실 방지 위한 설비 ④ 작업장 간 상호연락을 위한 통신수단 장비 및 설비
소음, 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시설물 및 장치	① 건설현장 소음방지 방음시설, 분진망 등 비산방지시설 ② 공사차량 유도안내, 주의, 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③ 공사안내, 경고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비콘, PE 드럼 등
중고 안전관련 시설	① 동일 시공업체가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을 전용 자재비(자재 운반비는 사용 가능)
근로자 안전 및 보건 목적이 아닌 장구 구입, 수리, 관리	①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②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피복, 장구, 용품 및 외부 인사 방문 시 제공되는 보호구
기타	① 공사 도급내역서 상 별도 반영된 안전관련 비용 ②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용 ④ 유도원 인건비가 도급내역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③ 그 외 상위 10개 종합건설사

- (계상기준) A건설과 같이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대부분 직접공사비 기준 요율 방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 요율은 시설물(토목·건축·산업설비 등)별 공종 등급(기간·인력투입·난이도 고려)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
 - 일반적으로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사용항목¹⁾ 중 ③보호구~⑨위험성평가 비용을 의미하고, ①안전·보건관리자 임금과 ②안전시설비는 별도 계상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은 안전관리자 선임(겸직 포함) 대상(50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에 대해 투입인월·수와 노임단가를 곱하여 별도 계상(근로자 보호 목적의 신호수 인건비는 투입인일·수 대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
 - 안전시설비는 종합건설사(원수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화하되, 하도급 공사에 따라 근로자 보호 목적의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량산출 및 일위대가를 통해 별도 계상

<표 7> 상위 10대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기준

구분	계상기준	정산기준
B건설	5개 시설물(건축·주택·하이테크·토목·에너지)과 세부 공종에 따라서 직접공사비의 0.3~2.0%로 계상(원전 골조와 같은 특수 공종은 별도 요율 적용)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반기별 1회 이상 사용 승인, 선지급(50%), 초과 집행 시 추가 정산 가능(승인 및 적정성 검토 이후)
C건설	주요 공종(골조·설비·토공사)과 일반 공종으로 구분하고 직접공사비의 0.3~1.0%+∞(인건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D건설	4개 분야(토목·건축·기계·전기)별로 위험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직접공사비의 0.25~0.8%로 계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E건설	시설물(건축·토목·플랜트)별로 4개 등급을 구분하고 공사비(직접 공사비+공과집비)의 0.2~0.8%+∞(인건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안전용품 현장 반입 시 사전 협의 및 검수
F건설	시설물(건축·토목·플랜트)별로 3개 등급을 구분하고 직접공사비의 0.3~1.0%+∞(인건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매월 25일 정산)
G건설	시설물별 직접공사비의 0.3~1.0%+∞(인건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H건설	시설물별 직접공사비의 0.05~1.6%로 계상하고 공사비 100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1.15~1.97%로 계상(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반영)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

- (정산기준) 종합건설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 공사 착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제출,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을 원칙화
 - 하도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시 검토 이후 추가 정산(지원)하는 일부 종합건설사도 존재

시사점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직접공사비 기준 요율 방식'이 타당하며,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본요율은 0.8~1.5%가 현실적
 - 상위 10대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에서 공사특성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임금과 안전시설비를 제외하고, 원·하도급 공사의 낙찰률²⁾,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를 고려한다면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본요율은 직접공사비의 0.8~1.5% 수준(③보호구~⑨위험성평가 비용)이 현실적
 - 하도급 공사종류에 따라 난이도, 위험도 등이 달라지므로 시설물·공종별로 ③보호구~⑨위험성평가 비용이 반영되는 기본요율을 차등 계상하고, 공사특성·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①안전보건관리자 등 임금, ②안전시설비는 실비반영 기준을 통한 별도 계상이 바람직
-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세부 집행계획 제출,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실비정산이 일반적
 - 요율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과 초과 집행 시 추가 정산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1) ①안전·보건관리자 등 임금, ②안전시설비 등, ③보호구 등, ④안전보건진단비 등, ⑤안전보건교육비 등, ⑥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⑦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등, ⑧분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⑨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
2)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되고 낙찰률도 미적용되나, 하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하도급 공사의 낙찰률이 적용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기준

법률 개정(안)

- 원·하수급자 모두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설문 응답자 80%, 종합건설사 65%)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개정을 통해 계상·선지급 의무화, 추가비용의 건설공사 관계자간 상호 부담을 명문화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하도급 계약에도 동일 적용(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50%)을 선지급 의무(제6항), 추가비용 발생 시 분담비율에 따라 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제7항)

<표 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①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①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신설>	⑥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관리비 중 5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⑦<신설>	⑦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한다.

계상기준

- 하도급 공사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본요율을 직접공사비(계약금액) 기준 0.8~1.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①고위험도와 多인력투입 업종(1.2~1.5%), ②도심지, 고소작업 등 안전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되는 업종(1.0~1.2%), ③실내 위주 공사(0.8~1.0%)를 기준으로 하되, <표 4>의 사용현황을 참조하여 시설물 특성 고려

<표 9>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전문건설 대입종	건축	토목(조경 포함)	산업설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5%	1.5%	1.5%
금속·창호·지붕건조공사업	0.8%	0.8%	0.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0.8%	1.0%	0.8%
상·하수도공사업	1.0%	1.5%	1.2%
수중·준설공사업	-	1.2%	1.5%
승강기·삭도공사업	0.8%	-	-
실내건축공사업	0.8%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	1.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	1.5%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0%	1.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	1.5%	1.5%
철도궤도공사업	-	0.8%	-
기계설비공사업	1.0%	0.8%	1.2%

-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별도 계상

<표 10> 안전보건관리자 등 임금 및 안전시설비 실비 반영 기준

구분	정의	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법령과 원도급자 요구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시 인건비	인원기준(개월수)×단가(월) : 겸직 시 1/2반영
신호수 등 임금	근로자 보호 목적의 신호수 인건비	투입 인원기준(일수) × 인건비 단가(일)
안전시설비	근로자 보호 목적의 안전시설 설치비	물량산출 × 대가표



RICON FOCUS
Vol. 18 / December 2025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 행 일 2025. 12.
발 행 인 김희수
발행위원 홍성호, 조재용
발 행 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